

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4. 3(수)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1996. 3. 21

나. 제출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기획감사실장)

다. 회부일자 : 1996. 3. 22

라. 상정 및 의결

- 제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의회(임시회)
 -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: 1996. 4. 1
 -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: 1996. 4. 1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가. 제안사유

- 성서공단과 월배준공업지역등에 소재한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중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
-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관련근거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(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) :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다. 주요골자

- 구 고문변호사를 현재 1인에서 약간명으로 개정(안 제2조 제1항)
-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(안 제2조 제2항)
-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 제1항 제5호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황정근)

본 조례(안)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중 법적분쟁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공정한 경쟁속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답변자 : 기획감사실장 김치권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전담 고문변호사 위촉시 수임료지급기준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중소기업체에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문변호사를 위촉시 수임료 지급기준에 의거 약간의 비용이 지급되며 고문변호사가 하는 법률자문사항은 관내 기업체가 기업활동중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분야별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촉규정을 둠.

5. 토 론

- 토 론 자 : 류광현 의원
- 토론요지 :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체에 국한하던 것을 구민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수정의결해 줄 것을 동의(조례안 제3조 제1항 제5호)

6. 수정안 요지

구 분	원 안	수 정 안
제3조 제1항 제6호		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